

##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증 나름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4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조 제2호 "대규모소매점의 개설허가 (매장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에 한함)"를 "대규모소매점(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의 개설허가"로 등조 제3호 "대규모소매점 개설자에 대한 변경권고"는 이를 삭제하고, 등조중 제4호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의 영업활동에 대한 권고 및 명령"은 이를 제3호 "도.소매업진흥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등의 판매활동에 대한 권고 및 명령"으로 하고 등조 제5호 "기타 도.소매업의 진흥과 조정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용하는 사항"은 이를 제4호 "기타 도.소매업의 진흥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등항 제1호 "농어촌개발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을 각각 "농정국장, 공업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지역경제국장"을 "공업경제국장"으로 한다.

제9조 제2항중 "심정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